

수 신 : 한국석유공사 사장

참 조 : 주유소운영팀 팀장

## 제 목 : 「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서」 해지 관련 통지 및 상표시설물 철거이행 각서

1.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### 2. 해지 사유

귀 공사와 \_\_\_\_\_주유소(대표자: \_\_\_\_\_)가 20 \_\_\_\_년 \_\_\_\_월 \_\_\_\_일 계약한 알뜰주유소 계약을 \_\_\_\_\_주유소 대표자 \_\_\_\_\_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해지하고자 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폴전환] SK GS HD SOIL 무상표 ,

[영업현황] 건물신축, 업종전환, 폐업, 임대계약종료, 경영악화

[기타사유 : \_\_\_\_\_ ]

### 3. 해지 요청일자

2017년 \_\_\_\_월 \_\_\_\_일부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.

### 4. 상표시설물 철거의무 발생에 따른 의무이행 동의

\_\_\_\_\_주유소 대표(또는 소유자) \_\_\_\_\_는 한국석유공사(이하 ‘공사’)와 동 주유소간 체결한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이 2017년 \_\_\_\_월 \_\_\_\_일 종료되어 계약서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알뜰주유소 상표시설물(폴사인, 심벌로고, 상호간판, 캐노피 디자인, 그 밖의 알뜰주유소로 인식될 수 있는 시설물 또는 디자인 등)의 철거의무가 즉시 발생하여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.

알뜰주유소 상표는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정식 등록(등록번호 : 제 41-0250745-000, 제41-0241189-0000) 되어 있어, 이를 권원(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)없이 사용 시 상표법 제230조의 벌칙(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) 및 제109조의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.

2017년 \_\_\_\_월 \_\_\_\_일

상 호 : \_\_\_\_\_주유소

주 소 :

대표자 : \_\_\_\_\_ (인)

- 주소 : 울산 중구 종가로 305 유통사업처 주유소운영팀

- FAX : 052-216-5943